의안번호	5115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의 원	김현미 의원 외 7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15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7일
발 의 의 원 : 김현미,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의원(8명)

1. 제안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생산 농산물 중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나 외관상 결함으로 폐기되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다. 못난이 농산물 지원사업,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종사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 생산물을 말한다.
4.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
2.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유통 전문인력 양성
3.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화 및 포장재 개발·제작
4.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5.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6.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7.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비촉진) 시장은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2025. 7. 22., 2025. 12. 30.>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기준, 제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5., 2011. 3. 9., 2011. 7. 14., 2011. 7. 28., 2013. 3. 23., 2014. 3. 24., 2021. 4. 13., 2025. 4. 22.>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异常低温),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黄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虫),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